

	등록번호	20160832	홈페이지
	최초등록일	2016.08.22.	홈페이지 준비중
	최종등록일	2025.01.23.	

디브커피(DIVCoffee)

정보공개서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T. 1533-1174

F. 044-868-7270

E-mail. bareuncompany3104@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수 변동현황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形)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서 사 항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디브커피 (DIVCoffee) 외 4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및 팩스
	개인사업자	2023년 02월 20일	김성일	T. 1533-1174 F. 044-868-727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598-32-01282

* 당사는 현재 [디브커피 (DIVCoffee)]와 [우리동네 찌개왕], [아구의민족], [파스타몽], [평화면
옥]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는 [디브커피 (DIVCoffee)] 대표자 외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
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셰프마인드	한끼맛있다	2024.08.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김성일, 김성수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셰프마인드	우리동네 찌개왕	2024.03.0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김성일, 김성수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셰프마인드	아구의민족	2024.03.0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김성일, 김성수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셰프마인드	파스타몽	2024.03.0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김성일, 김성수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셰프마인드	평화면옥	2024.08.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김성일, 김성수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앞으로 「디브커피 (DIVCoffee)」 이라 합니다)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디브커피 (DIVCoffee)	없음
상호	디브커피 (DIVCoffee) ○○점	없음
상표 (서비스표)		‘1-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참조
그 밖의 영업표지		동일브랜드명의 그 밖의 로고 (상기 서비스표 출원 받은 로고를 원칙으로 하되, 간판형태에 따라 반영함)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24,459	-	-

* 근거자료는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디브커피 (DIVCoffee)	2021	-	-	-
	2022	-	-	-
	2023	-	-	-
아구의민족	2021	-	-	-
	2022	-	-	-
	2023	-	-	-
우리동네찌개왕	2021	-	-	-
	2022	-	-	-
	2023	-	-	-
파스타몽	2021	-	-	-
	2022	-	-	-
	2023	-	-	-
평화면옥	2021	-	-	-
	2022	-	-	-
	2023	-	-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명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인원	김성일	공동대표	2016. 10.~현재	(주)쉐프마인드	사업총괄, 기획, 관리
		대표자	2023. 02.~현재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총괄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등록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한끼맛있다	20160832	2024.08. ~ 2024. 12	스테이크, 파스타 , 필라프 등
		아구의민족	20210317	2024.03. ~ 현재	한식 가맹사업
		우리동네찌개왕	20210386	2024.03. ~ 현재	한식(찌개류) 가맹사업
		파스타몽	20200514	2024.03. ~ 현재	파스타 가맹사업
		평화면옥	20201559	2024.08. ~ 현재	우동, 덮밥 가맹사업

* 당사의 영업표지[DIV COFFE]는 영업표지[한끼맛있다]에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디브커피 (DIVCoffee)]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사용기간)
<서비스표> 	제43류	출원일 2019. 12. 13. 등록일 2021. 02. 17.	출원번호 40-2019-0193815 등록번호 40-1694083-0000	김성일	2031. 02. 17.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디브커피 (DIVCoffee)]를 시작한 날: 가맹사업 준비 중

- * 당사의 영업표지[디브커피 (DIV COFFEE)]는 영업표지[한끼맛있다]에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 [한끼맛있다]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6년 09월 08일 입니다.

2. 가맹사업 연혁

[디브커피 (DIVCoffee)]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디브커피 (DIVCoffee)	김성일	가맹사업 준비 중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주)쉐프마인드	한끼맛있다	김성일, 김성수	2016.09.08. ~ 2024.08.0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한끼맛있다	김성일	2024.08.02.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3. 가맹사업 업종

[디브커피 (DIVCoffee)]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디브커피 (DIVCoffee)	커피	커피, 라떼, 디저트 등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디브커피 (DIVCoffee)]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개년도 [디브커피 (DIVCoffee)]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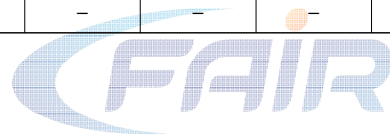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현재 [디브커피 (DIVCoffee)] 가맹사업과 [아구의민족], [우리동네찌개왕] 가맹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단위: 개)		
				21.12.31.	22.12.31.	23.12.31.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아구의민족	20210317	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우리동네찌개왕	20210386	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파스타몽	20200514	양식	1/0	1/0	해당없음
	평화연옥	20201559	우동, 덮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당사의 [디브커피(DIV Coffee)] 가맹사업은 현재 준비 중으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연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연평균	3.3㎡당	상한	3.3㎡당	하한	3.3㎡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현재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사업 관련 연간광고 및 판촉비 내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온라인광고 등	2021.1. ~ 12.	-	-	-	-
		2022.1. ~ 12.	-	-	-	-
		2023.1. ~ 12.	-	-	-	-
판촉	-	2021.1. ~ 12.	-	-	-	-
		2022.1. ~ 12.	-	-	-	-
		2023.1. ~ 12.	-	-	-	-

11. 가맹금 예치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금 예치은행에 의한 예치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 (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T. 1670-7000
보험계약자 (가맹본부)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보험계약자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가맹점영업개시일 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形)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9,900	계약체결일	-	-	-
가맹비	5,50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기존 가맹점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가맹비 : 3,300
교육비	4,400	계약체결일	교육개시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교육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당사에서는 현재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재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보증금에 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9,900
가맹비	5,500
교육비	4,400

* 기존 가맹점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가맹비는 3,300,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 33㎡ [10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62,700	6,270	-	-	-
간판	가맹본부	5,500	550	계약체결시 협의결정	계약체결시 협의결정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22,000	220	계약체결시 협의결정	계약체결시 협의결정	특수상권 시공 시 별도금액 발생
기자재 (설비, 집기)	업체자율 (요청시 가맹본부)	33,000	330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
기타 품목	업체자율	1,100	55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
초도물품	가맹본부	1,100	110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
POS 설비	가맹본부 지정업체	렌탈형 (월사용료유)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이지포스
별도사항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기존시설물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샤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상하수도공사, 냉난방공사, 방수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외부닥트공사, 외부갈바공사, 테라스, 화장실 등					

- * 위 표의 금액은 추정치로서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간판은 1면 전면간판 기준이며,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는 매장규모 및 매장 현장상황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매장 또는 대형마트내, 백화점내 등 특수상권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인테리어에 관하여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제공하는 설계시방서와 당사가 파견하는 인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당사에게 220만원(부가세포함)의 설계·시방서 제공비용과 3.3㎡당 22만원(부가세포함)의 지도감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권장품목에 대해 귀하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샤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전기승압공사, 외부닥트공사, 화장실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업종변경의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는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 일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디브커피 (DIVCoffee)』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16.5	익월 5일	해당없음	소멸성비용	전월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요청 시 가맹본부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점포환경 개선	요청시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Ⅷ-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후 반환불가	-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Ⅴ-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 경과 시 부담
POS	가맹본부 지정업체	33	지정업체와 협의	해당사항 없음	사용 대기 지급	이지포스

- * 광고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부담비용에 관하여는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요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개점이후 교육비에 관하여는 “Ⅷ-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제재고의 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1533-1174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년 1회 이상 및 요청시	문의 1533-1174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귀하가 운영하는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양도에 앞서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은 후에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기존계약의 승계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반면,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의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제거·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종료 후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철거·제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 디브커피 (DIVCoffee) 』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 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 디브커피 (DIVCoffee)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 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가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 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상품 일체 -하단3) “상품품목 및 권장가격”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디브커피(DIVCoffee)” 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미성년자	주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	-------------	----------	----

아메리카노	2,000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통지, 홈페이지공지 등	
ICE 아메리카노	2,500		
카페라떼	3,500		
ICE 카페라떼	3,500		
초코라떼	3,900		
ICE 초코라떼	3,900		
오레오 초코라떼	3,900		
ICE 오레오 초코라떼	3,900		
ICE 딸기라떼	3,900		
자몽에이드	3,900		
레몬에이드	3,900		
블루레몬에이드	3,900		
청포도에이드	3,900		
오렌지에이드	3,900		
요거트스무디	4,500		
딸기요거트스무디	4,500		
망고요거트스무디	4,500		
레몬오렌지자몽주스	4,900		
레몬샤인머스켓주스	4,900		
플레인 쌀취낭시에	3,500		
피칸초코 쌀취낭시에	3,900		
그린바나나 쌀취낭시에	3,900		
유자 쌀파운드	4,400		
흑임자 쌀파운드	4,400		
바스크치즈케이크	5,900		
플레인 쌀스콘	4,400		
황치즈 쌀스콘	4,400		
초코 쌀스콘	4,400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카페업종	디브커피 (DIV Coffee)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반경 500m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쇼핑센터, 종합병원, 호텔 등 대형건물과 지하상가, 공항, 역사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구별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 90일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계약기간 만료 전 60일 이내 합의여부회신) → 영업지역 변경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

맹점사업 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 디브커피 (DIVCoffee) 』 영업표지, 브랜드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에도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2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 일반적인 해지 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표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8조 제3항	제41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17조	
가맹본부의 감독 및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개발, 변경, 판매, 사용하는 경우	제24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메뉴 및 변경, 수정, 보완된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 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기자재(설비, 집기) 설치 및 유지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5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 판촉행사, 판촉비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27조, 제28조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등 조달과 관리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0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등에 관하여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제36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을 관련하여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43조 제1항 제13호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4조	

나.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각호

다. 가맹점사업자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1조 제3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월평균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제3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다. 가맹본부가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제41조 제3항 제2호

라.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 후 양 당사자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 및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 1533-1174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가맹본부 외 제 3자의 위탁 경영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 디브커피 (DIV Coffee) 』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디브커피 (DIVCoffee)]와 동일한 컨셉이거나, 노하우를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	국내 전지역	해당사항 없음 문의: 1533-1174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년 이내		기존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디브커피 (DIVCoffee)]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 디브커피 (DIVCoffee)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시 ~ 21시 권장 (1일 10시간 이상) 협의가능	월 26일 이상 영업일 준수 (2月:24일) (단, 특수상권은 해당상권의 영업방침을 따름)	문의: 1533-117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권장	제한없음 (최소 2인 이상)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기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빈도 및 시기
Quality (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가정매입 여부 확인 등	방문 및 유, 무선 등 통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수기 관리·감독 문의: 1533-1174
Service (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 (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 디브커피 (DIVCoffee)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광고 계획 공고 →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 분담금 지급	
	상품광고 + 개별광고				
	개별광고	없음	전액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판촉행사	공동판촉활동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상기와 동일	
	기타개별행사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에 보호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실질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경영파트너를 포함)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변심 등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아래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사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도 및 승계,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미 진행된 내·외장 공사 관련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200만원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만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단, 잔여개월수 5개월 초과시는 5개월로 정함)	100만원 * 잔여개월수 (최대위약금은 500만원)

- ③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 일매출 제출 시: “직전분기 3개월간의 평균 일매출액 X 계약 종료후의 영업일수 X 30%”의 공식을 적용한다.
 - 일매출 미제출 시: “직전 분기 3개점의 평균 일매출액 X 계약 종료후의 영업일수 X 50%”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④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후의 의무사항(간판, 그릇, 상표 등에 대한 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체일수 X ₩100,000)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체배상금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45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45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이천만원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가맹본부가 지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12. 가맹본부의 가맹점 CCTV 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CCTV 자료 열람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CCTV 자료 열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고객클레임 발생 시 근거자료 활용
- ② 가맹점 위생상태 및 제품 제조과정 및 제품상태를 확인
(단, 가맹본부는 영업시간내 자료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1533-1174) - 직접방문	D-45	
1차 상담	- 전화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	
점포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 개설 최종 협의	D-30	
가맹계약체결 및 피해보상보험체결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체결	D-29	
점포실측 / 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D-28	
도면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 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7~2	
교육	- 교육(개정전 교육)	D-6~2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점포선정의 지연 내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의 지연 등 오픈 준비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되며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자문절차		
1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귀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14일 이전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선택 방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후 귀하가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합니다.
3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4	자문확인서 수령 (14일 → 7일 단축 희망 시)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5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년으로 한다)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자가 추구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 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 1533-1174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1533-1174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 디브커피 (DIVCoffee) 』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음료 제조 교육	커피, 라떼, 에이드 등 음료제조 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위생 관리 교육	기자재, 식자재, 매장 등 관련 위생 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매장 운영을 위한 교육 서비스 관련接客 방법, 마인드 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메뉴교육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교육 등	실습교육	1일 (실시 15일 전 사전통지)	가맹본부 신메뉴 출시시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교육	1일 (실시 7일 전 사전통지)	가맹점주 요청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 디브커피 (DIVCoffee) 』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전 교육		5일	Ⅳ-1) 최초가맹금 중 교육비 참조	최초 계약시 이수 (1일당 7시간 교육기준)
개점 후 교육	신메뉴 교육	1일 (3~4h)	가맹본부와 협의 후 실비 발생 시 청구	가맹본부 신메뉴 출시교육
	특별 교육	1일 (3~4h)	가맹본부와 협의 후 실비 발생 시 청구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 2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종업원 2인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의 [디브커피 (DIVCoffee)]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의 직영점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